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업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안 제17조의3)

III. 검토의견

-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6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반 위원과 고문의 경우는 매년 연임이 가능하여 큰 변동이 없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 위원장의 경우 종전 2년에서 4년까지 임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 관한 현행 규정은 2002년 6월 3일 조례 전문개정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정한 것으로써, 2003년 10월 제2차 조례개정시 위원장의 임기연장에 관한 논의가 이미 한차례 있었으나

위원장직을 장기간 유지함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임기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의 잦은 교체는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가 될 수 있고 위원장의 임기가 짧아 축적된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중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현행 우리 구와 같이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자치구가 19개 구가 있는 반면, '2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자치구가 4개 구, '2년 임기에 연임제한이 없는' 자치구가 2개 구 있는 등 각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임기를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第8條 (事務處理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事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住民의 편의 및 福利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관련)

구 분	시·도 사 무	시·군·자치구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자치구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현황

□ 총 관

위원장 임기별	계	1년, 1회 연임	2년, 1회연임	2년, 연임가능
구 청 수	25개구	19개구	4개구	2개구

2005. 9. 30 현재

자치구명	임 기	연임가능 여부	비 고
중 로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3. 10. 24 개정
중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3. 9. 26 개정
용 산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2. 7. 11 개정
성 동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2. 12. 30 개정
광 진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3. 5. 17 개정
동대문구	2년	연임가능	2000. 11. 1 개정
중 랑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2. 10. 16 개정
성 북 구	2년	1회 연임가능	2005. 7. 14 개정
강 북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0. 2. 26 제정
도 봉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0. 8. 2 제정
노 원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2. 9. 25 개정
은 평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0. 8. 8 제정
시대문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3. 6. 5 개정
마 포 구	2년	1회 연임가능	2000. 10. 30 제정
양 천 구	2년	1회 연임가능	2000. 7. 30 제정
강 서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0. 5. 16 제정
구 로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2. 7. 30 개정
금 천 구	2년	연임가능	2005. 2. 16 개정
영동포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0. 7. 22 제정
동 작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2. 9. 28 개정
관 악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5. 2. 23 개정
서 초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1. 3. 27 제정
강 남 구	2년	1회 연임가능	2002. 4. 26 개정
송 파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2. 8. 19 개정
강 동 구	1년	1회 연임가능	2002. 11. 25 개정